취업규칙

<2020.03.09.개정 >

3장 복무

현 행	개정 안	사유
-	**제36조-2 (자녀돌봄 휴가제도)** (신설 2020.03.09.) (1) 대상자: 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(2) 사용요건: 자녀의 입학식, 졸업식, 학부모 총회·설명회·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(3) 시행일: 연간 2일(연중실시) -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종사자 1인당 연간 3일 이내 사용 -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, 반일단위(4시간)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	서울시운영지원 신설